

2023년 하반기 해외판촉사업(온·오프라인) 공고문

1. 사업목적

- 해외 판촉(시식, 시음 등) 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 수출·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

2. 지원대상

- 한국식품 취급 수입바이어, 식품기업 현지법인, 유통업체
 - * 수출업체는 현지바이어가 관할 aT 해외지사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행사기간 : '23. 사업 선정일(7월) ~ 11월

3. 지원품목

- 수출 증가세에 있거나, 향후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* 수산물 및 임산물 제외
- 검역기준 완화 등에 따른 신규진출 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판촉 지원이 필요한 농식품

4. 지원사항

- 지원한도 : 50~200백만원
- 지원항목 : 해외유통채널 판촉마케팅 관련비용 지원 (임차, 장치, 홍보 및 시식행사비 등)
 - (1) 임차·장치·입점 :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임차 및 설치비용
 - (2) 홍보 : 판촉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, 미디어매체 광고, 현수막, 전단지, 인터넷 배너 제작, SNS홍보, 온라인 시식체험, 증정품·경품행사, 포인트·쿠폰행사, 식품중개인 기획·입점 관련 비용 등
 - * 증정품·경품·포인트·쿠폰 등은 합산하여 배정예산의 25% 한도
 - (3) 시식행사 : 판촉요원 고용비, 시식 식품비(배정예산의 10% 한도) 및 관련 소모품비 등
- 지원비용

구 분	지원비율	사업의무액(목표수입액)
일반품목	최대 지원한도 이내 실제집행 비용의 80% (단, 대기업제품 단독판촉 50%)	바이어(유통업체) 신청예산의 최소 2~3배 이상을 목표수입액으로 설정·제출 * 3배 이상 : 가공식품(라면, 스낵, 음료, 주류, 유제품, 차류, 쌀가공, 소스류 등) 및 유통매장 직접연계 판촉 * 2배 이상 : 신선식품(채소류, 과일류, 버섯류, 김치류, 인삼류) * 1배 이상(기준완화) : 최근 5개년 검역해소품목 및 '23년 미래클 품목, 신북방국가, 시장다변화 전략국가*' (단독 판촉일 경우만 해당)
신선농산물, 인삼, 김치, 유자차, 삼계탕	최대 지원한도 이내 실제집행 비용의 90% (단, 대기업제품 단독판촉 50%)	

- * 수입바이어, 유통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자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, 해당 목표 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같음하여 실제 달성한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최종 사업비 정산 예정
- * aT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 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이 줄어든 비율만큼 목표수입액도 감액됨
- * 대기업 :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(C, 롯데 신세계 하림 KGC 동원 하이트진로 삼양 농심 등)
- ※ 2023년 시장다변화 전략국가(20개국) : 멕시코, 카자흐, 독일, 영국, 사우디(카타르 포함), 호주, 캐나다, 필리핀, 인도, 튀르키예, 아르헨티나, 남아공, 과테말라, 뉴질랜드, 이스라엘, 스페인, 벨기에, 네덜란드, 캄보디아, 몽골

5. 신청안내

- 접수방법 : 행사권역 aT해외지사로 **이메일 접수** *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
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(양식 첨부)
- 접수기간 : **2023.6.15. ~ 6.25. 까지** * 한국 표준시 기준

6.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

권역	지사	연락처
중국 화북지역, 허난성, 서북 및 서남지역	베이징지사	beijingat@at.or.kr 86-10-6410-6120 86-138-8016-1031(서북, 서남 지역)
중국 화동, 화중 및 화남지역	상하이지사	shanghaiat@at.or.kr 070-7077-6199, 86-021-3256-6325
중국 동북 3성(랴오닝성·지린성·헤이룽장성), 몽골	다롄지사	dalianat@at.or.kr 86-411-3960-3361
중국 산둥성	칭다오aT물류유한공사	qingdao_logistics@at.or.kr 86-532-6696-2229
홍콩·마카오·대만·중국 광둥성	홍콩지사	hkatcenter@at.or.kr 852-2588-1614
일본 관동지역	도쿄지사	tokyo@at.or.kr 81-3-5367-6656
일본 관서지역	오사카지사	osaka@at.or.kr 81-6-6260-7661
미동부·캐나다	뉴욕지사	newyork@at.or.kr 1-212-889-2561
미서부·중미	LA지사	losangeles@at.or.kr 1-562-809-8810
남미(브라질, 칠레, 아르헨티나 등)	상파울루지사	saopaulo@at.or.kr 55-11-91045-4577
베트남 북부·라오스	하노이지사	hanoi@at.or.kr 84-24-6282-2987
베트남 남부·필리핀·캄보디아	호치민지사	atcenterhcmc@at.or.kr 84-28-3822-7504
태국·미얀마·인도	방콕지사	bangkok@at.or.kr 662-611-2627
인도네시아·오세아니아	자카르타지사	jakarta@at.or.kr 62-21-2995-9033
말레이시아·싱가포르	쿠알라룸푸르지사	atcenterkl@at.or.kr 60-3-2706-4299 65-6403-4041(싱가포르)
중동·아프리카	두바이지사	dubai@at.or.kr 971-4-339-2213
러시아(신북방)	모스크바지사	atmoscow@at.or.kr 070-4617-3277 +7-914-714-9461
유럽·이스라엘	파리지사	paris@at.or.kr 33-1-4108-6077

* 국내 문의처 : aT 식품수출부 061-931-0744, 0746

2023년 온·오프라인 해외판촉사업 지원신청서

◎ 신청업체 정보

주 관 사 (바이어)	직접연계시 직접연계로 기재	담 당 자	
주 소			
전화번호		E-Mail	
한국 농식품 수입실적('22)	(USD)	주요 취급품목	

◎ 행사계획

지원구분 (해당사항 ☒)	지원비율 50% ☐ 한국 대기업 제품 단독 판촉(CJ, 롯데 신세계 KGC, 동원 하이진북 농심 등)				
	지원비율 80% ☐ 일반 가공식품 단일 품목 판촉 ex)라면 판촉				
	지원비율 90% ☐ 일반 가공식품 다품목 종합판촉 ex)라면+유제품 판촉				
행사국가			행사도시		
행사기간			행사일수	(일)	
행사매장			매 장 수	(점)	
행사 대표품목1	품목명			제조사	
행사 대표품목2	품목명	제조사	행사 대표품목3	품목명	제조사
행사 대표품목4	품목명	제조사	행사 대표품목5	품목명	제조사
신청예산	(원화)	(USD)	목표수입액 (=사업의무액)	(원화) * 신청예산의 00배	
행사중점 추진방향	- ex) ~~홍보 행사로 해당 시기 판촉 희망				
기대효과	-				

* 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(원화)을 사업자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, 해당 목표수입액을 기존의 사업의무액으로 같음하여 최종 사업비 정산 및 송금 시, 해당 목표수입액(사업의무액) 대비 실제 달성한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업체가 배정받은 예산에서 차감하여 송금할 예정이오니, 목표 수입액을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* 해외판촉 사업 선정 시, 실제 배정받는 예산은 업체 신청예산보다 적어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이 줄어든 비율만큼 목표수입액도 감액됩니다.

◎ 행사 유통매장 및 온라인 플랫폼 정보

유통매장1		총점포수	
주 소 (본점)			
홈페이지		매출액 (`22)	(USD)
한국식품 취급현황	☐ 주요 취급품목 : ☐ 특이사항 :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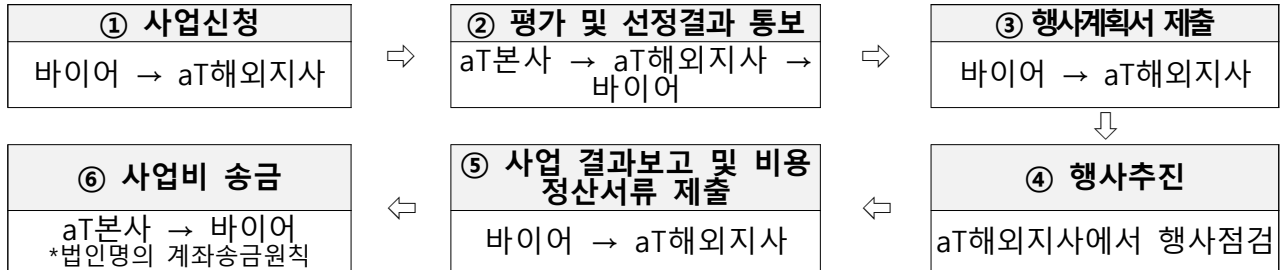
유통매장2		총점포수	
주 소 (본점)			
홈페이지		매출액 (`22)	(USD)
한국식품 취급현황	☐ 주요 취급품목 : ☐ 특이사항 :		

유통매장3		총점포수	
주 소 (본점)			
홈페이지		매출액 (`22)	(USD)
한국식품 취급현황	☐ 주요 취급품목 : ☐ 특이사항 :		

유통매장4		총점포수	
주 소 (본점)			
홈페이지		매출액 (`22)	(USD)
한국식품 취급현황	☐ 주요 취급품목 : ☐ 특이사항 :		

2023년 온·오프라인 해외판촉사업 안내

1. 사업추진 절차



2. 지원기준

1) 판촉형태

- 판촉은 반드시 현지 유통채널 내 행사품목이 입점되어 있어야 하며, 시식 또는 시음활동이 이루어져야 함
- 온라인 판촉 및 시식활동이 어려운 경우 유통매장 내 행사관련 홍보물이나 장치 필수 설치(현수막, 배너, 판넬, 매대설치 등)
- 오프라인 판촉의 경우 유통매장 판촉 없이 단순 제품설명회, 홈쇼핑 판촉, 카탈로그 제작 등 추진 불가
- 온라인 판촉시 해외 온라인·O2O 매장 및 플랫폼 활용(온라인시식, SNS 홍보 등)

< 온라인 판촉 예시 > * 항목별 지원기준 해석이 필요한 경우 aT와 사전협의 필요

- ① 제품소개나 레시피 콘텐츠 제작 배포, 유튜브, 페이스북 등 활용 미디어 홍보 및 이벤트 실시, 앤드캡, KIOSK 및 E-Pop 스크린, 무인 전용매대 설치, 시식체험을 위한 푸드트럭, 온라인 시식 등
- ② O2O매장 행사 관련 해당사이트 메인페이지, 슬라이딩, 배너광고 제작, SNS, 유튜브 내 쇼핑태그, 링크 등
- * 온라인몰은 오프라인 매장과 직접 관련된 곳이거나 '유통매장 전용관'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
(ex 중국 하마선생 유통매장 연계 하마선생앱 홍보 가능, 태국 TheMall 매장 연계 HappyFresh앱 내 TheMall 전용관 홍보 가능)

2) 사업의무액

- 사업 신청 시 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간주하며, 신선은 신청예산의 최소 2배, 가공은 신청예산의 최소 3배 이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해야 100% 정산 가능
- 판촉행사 품목의 수입의무액으로 행사기간 전후 30일 동안의 수입실적으로 달성여부 판단, 미달성 시 달성 비율(%)에 따라 최종지원금 감액 지급

- 현지 공식 수입신고서 제출하되, 인보이스 제출시는 B/L첨부(수입증빙 제출이 어려울 경우, 협의 후 수출신고필증(이행완료) 제출)
- 중국지역의 경소상 연계 판촉의 경우, 거래관계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수입대행증명 첨부
- 벤더일 경우 수입상과 거래관계증빙(계약서 등)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 동시 제출시 인정

3. 기타

- 행사국가, 매장, 품목은 변경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 피한 경우 aT 해외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비는 '선지출, 후정산' 원칙으로 결과보고시 정산증빙 서류 제출 필요
- * 지원항목별 필요 정산 증빙은 각 aT해외지사로 문의